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0
----------	-------

제출년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대여점을 설치 운영 중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장난감대여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난감대여점 위탁계약 기간 개정(안 제16조제2항)

나. 위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13조(설치 및 운영) 및 제22조(위탁기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1. 6. 3. ~ 6. 23.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06.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장난감대여점 위탁계약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위탁계약) ① (생 략)</p> <p>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u>5년</u> ----- --,-----.</p>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윤보미 (☎3153-8903)